

Koreans Branching Out Around the World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남·여 10학급)

| 모집단위 | 학 과 | 독일어과 | 프랑스어과 | 스페인어과 | 일본어과 | 중국어과 | 영어과 | 6과 |
|------|--------------|----------|-------|-------|------|------|-----|------|
| | 학급 수 | 1 | 2 | 2 | 1 | 2 | 2 | 10학급 |
| 정원내 | 사회통합전형(20%) | 5 | 10 | 10 | 5 | 10 | 10 | 50 |
| | 일반전형(80%) | 20 | 40 | 40 | 20 | 40 | 40 | 200 |
| | 합 계 | 25 | 50 | 50 | 25 | 50 | 50 | 250 |
| 정원외 | 보훈자자녀전형 | 정원의 3%이내 | | | | | | 7 |
| | 고입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정원의 2%이내 | | | | | | 5 |
| | 외국인전형 | | | | | | | 20 |
| | 합 계 | | | | | | | 32 |

※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학과별로 선발하며(학과 복수 지원 금지), 모집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회통합전형은 유형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해당 학과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과별 최대 모집정원을 정함(독일어과 1명, 프랑스어과 3명, 스페인어과 3명, 일본어과 1명, 중국어과 3명, 영어과 4명)

※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화균등전형)으로 지원해야 함

※ '정원 외' 각 전형에서, 합격자는 전원 지방학과에 배정함

2 모집단위별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형구분 | 지원 자격 |
|------|---|
| 공통사항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4) 타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음 |

나. 전형유형 및 세부 지원 자격: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 구 분 | 유형별 지원 자격 | |
|-----|--|--|
| 정원내 |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 |
| |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4)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1 의 (표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5)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1 의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6)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7)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
| | 사회 다양성 전형 1순위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호 및 제4조제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6)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7) 장애인(1급~3급)의 자녀 8)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
| | 사회 다양성 전형 2순위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2)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3)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 |
| 정원외 | 보훈자 자녀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고입특례입학 대상자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제3항 제2호의 각목 및 제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외국인전형 ●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 | |

※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 기회균등전형 입학자는 입학 후 매년 자격심사를 다시 받아 당해 학비지원 여부를 결정함

◀ 참고 사항 ▶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 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나.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 ※ 교육지원대상자는 '보호자 자녀전형(정원 외)'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
- 다. 기회균등전형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 **참고자료1**의 <표>, <표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추가 확인)
 - 1)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 확인
- 라. 학교장 추천 대상자 추천 요건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 가. 지원자격제한(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 1)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 확인

| 소득 구분 | 월 소득 환산액 | 건강보험 납입금 | | | 재산세 납입금 | | |
|-------|------------|----------|----------|----------|--------------|----------------------|-------------|
|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재산 추정 금액 | 과세 추정 금액(재산추정금액 60%) | 재산세 납입금(연간) |
| 8분위 | 6,213,497원 | 195,224원 | 217,535원 | 198,786원 | 621,349,700원 | 372,809,820원 | 861,230원 |

-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한 경우에도 부모 모두 확인, **참고자료3**, **참고자료4** 참고)
- 나.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자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함
- 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유의사항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 제한

- 고입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9학년도 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가. (정원외)보훈자녀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모집정원의 3% 이내 선발
- 나. (정원내)기회균등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

4. 고입특례입학대상자

- 가. 정원 내 모집 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4호 및 제4호 해당자

| 구분 | 자격요건 | |
|--|--|--|
|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제4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북한 이탈 주민 등(제4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당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 | |
| 나. 정원 외 모집 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 |
| 구분 | 자격요건 | |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 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 외국인 학생(제2호 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
| 북한 이탈 주민 등(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한 졸업(예정)자 | |

3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 구분 | 일시 | 장소 | 유의사항 |
|---------------------|--|--------------------------|--|
| 인터넷 원서접수 | 2018.12.10.(월)~12.12.(수) 접수기간 중 24시간 운영 12.12.(수)은 13:00까지 | 홈페이지 | o 전형료 27,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o 접수방법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 출력한 원서 및 제반서류 접수 | 2018.12.10.(월)~12.12.(수)(09:00~17:00) | 본교 | o 직접방문제출 (대리인 가능), 우편 접수 불가 o 제반서류 제출(자기소개서 미포함) |
| 면접대상자 발표 | 2018.12.14.(금) 17:00 | 홈페이지 | o 1단계 합격 여부 확인 |
|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 2018.12.14.(금) 17:00~12.18.(화) 17:00까지 | 홈페이지 | o 온라인 작성 제출 (작성기간 중 24시간 운영) |
| 면접 전형일 | 2018.12.24.(월) | 본교 | o 수험표, 신분증 지참 o 면접시간 추후 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12.28.(금) 17:00 | 홈페이지 | |
| 추가 모집 | 원서접수 | 2019.01.16.(수)~01.17.(목) | 본교 |
| | 면접 전형일 | 2019.01.18.(금) | 본교 |
| | 합격자 발표 | 2019.01.21.(월) | 본교 |
| | 합격자 예비소집 | 추후 공지 | 본교 |
| 합격자 등록금 납부 | 2019.01.28.(월) ~ 01.30.(수) | 지정금융기관 | o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

※ 학교 생활기록부 출력마감 기준일은 2018. 11. 08(목)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 및 자기소개서(차 합격자 온라인 제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4 제출 서류

| 대 상 | | 제출 서류 | | | |
|-------------------|---|--|---|---|-----------------|
| 지원자 공통 | <p>○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 담임교사 확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p> <p>○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원본 2부(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처리, 단면 출력) - 수상경력(4번)은 제외하고 출력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에서 영어, 국어, 사회(사회가 없는 경우 역사) 과목의 원점수, 과목명칭(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제외하고 출력 -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은 제외하고 출력 ※ 비교과영역(출결, 봉사 등) 산출 기준일은 2018.11.08.(목)</p> <p>○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는 국내 최종 학년 제적증명서 1부, 해외학교 졸업 증명서 1부 및 최종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1부</p> <p>○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과 성적증명서(해당 지역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또는 담당 장학사 날인) 각 1부</p> <p>○자기소개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단, 1단계 합격자에 한함)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및 감점 처리</p> <p>■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국내 ·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스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p> <p>- 상기 배제사항에 대한 간접적 · 우회적 기재 모두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검색)</p> <p>○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인터넷 접수 · 동의 후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서류 접수 시 제출</p> <p>○주민등록등본 1부 (단, ①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② 외국인전형 지원자는 제외)</p> | | | | |
| | 사회통합 공통 | <p>● 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보존자녀전형 · 고입특례인학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p> <p>● 2019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p> <p>●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부 · 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p> | | 동주민센터 | |
| 사회 통합 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학교) 1부 | | | |
|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 구청, 동주민센터 |
|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 | 구청,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 구청, 동주민센터 |
| |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 | 구청, 동주민센터 |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 구청, 동주민센터 | |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역건강 보험료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 |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 | (부 · 모 모두제출) ※ 등본상 가족 구성원 분리 시에도 모두 제출 | |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 | 구청, 동주민센터 |
| 학교장 추천 | <p>● 학교장 추천서 1부</p> <p>●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p> <p>●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가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p> | | | | |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 | | 관할 보훈지청 | |
| 사회 다양성 전형 | 사회다양성 공통 (부 · 모 모두제출) ※ 등본상 가족 구성원 분리시에도 모두 제출 | 지역건강보험료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 | |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
| | | ● 재산세 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 | 구청, 동주민센터 | |
| | 다문화가정 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사본 또는 귀화증명서 1부 | | |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1부 | | | | |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선정 · 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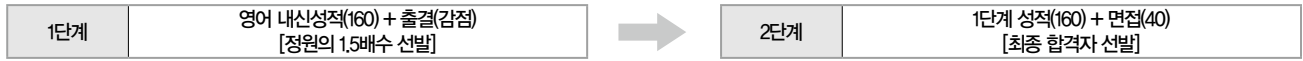
| | | | |
|-------------------|--|------------------------|---|
| 사회 통합 전형 | 사회 다양성 전형 | 도시벽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 | 이동복지시설보호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 |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1부 |
| | | 장애인(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 | |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교원·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 | 한부모가정자녀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부·모 모두 제출 |
| | | 다자녀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 학부모 확인서 1부 |
| | |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15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

| 대 상 | 제 출 서 류 |
|-------------|---|
| 보훈자녀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보훈자녀전형·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2019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1부 :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 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보훈자녀전형·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 ●2019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타시도 출신자: 고입특례입학대상자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 외국인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부모 포함) ●중학교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VISA 발급 후 입학 |

-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는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 영어 등 각종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증 등은 제출하지 않음
- ※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중학교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제외하여 출력,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영어, 국어, 사회(사회가 없는 경우 역사) 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 학교생활기록부(단면 출력) 학교장 직인으로 날인 및 간인하여 제출
-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자주주도학습전형 절차



- 1) 1단계: '영어 내신성적(160) + 출결(감점)'로 선발
 가)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영어 내신성적 =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성취도 수준별 부여점수의 합

- ※ 내신성적은 중학교 2, 3학년(4개 학기)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을 활용(학기별 40점)
-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
-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형 2단계 전형 대상으로 선발함.

- 나)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 성취도 수준 | A | B | C | D | E |
|----------|----|----|----|----|----|
| 학기당 환산점수 | 40 | 36 | 32 | 28 | 24 |

-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함 (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또는 3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을 부여함

- 다) 내신성적 산출 관련 유의사항

- (1) 영어 내신성적 산출 유의사항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학년 제외를 반영하되, 조기진급자는 3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하고,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한다.
 - ② 2, 3학년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학생은 소속 중학교의 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성적을 반영하되 소속 중학교의 지침이 없는 경우 학년별로 최인점 성적을 반영한다.
- (2) 해외 중학교 출신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 ① 2학년 국내 성적만 있고 3학년 국내 성적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 2학년은 국내 성적으로, 3학년은 해외 성적을 반영한다.
 - ② 국내 중학교 2, 3학년 성적이 모두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 해외 최종 4학기 영어성적을 성취도 수준(A,B,...)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수

| 성취도 수준 | A | B | C | D | E |
|--------|----|----|----|----|----|
| 부여점수 | 40 | 36 | 32 | 28 | 24 |

- ③ 동점자 발생 시, 국어·사회 교과 대신 영어·사회 관련 교과(social studies, geography 등)를 반영함 (※ 사회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역사 관련 교과(history 등)를 반영하며, 역사 관련 교과가 없는 경우 외국어 관련 교과(spanish 등)를 반영함)

[동점자 처리 기준] 괄호(인)의 과목명은 사회과목이 없을 경우 대체과목 순서
 : 3학년 2학기 영어 → 3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3학년 1학기 영어 → 3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2학기 영어 → 2학년 2학기 사회(역사/외국어) → 2학년 1학기 영어 → 2학년 1학기 사회(역사/외국어) 순으로 반영

- ④ 해외 중학교 출신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3)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국어, 사회 과목의 원점수를 아래의 조건표에 의해 성취도 수준을 반영한다.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점수 환산 성취도 수준

| | | | | |
|--------|------|-----------|-----------|-----------|
| 원점수 | 90이상 | 90미만~80이상 | 80미만~70이상 | 70미만~60이상 |
| 성취도 수준 | A | B | C | D |

라) 출결 상황 산출 방식

출결 = -(무단결석 일수)

- (1)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결 점수 산출 기준 : 2018. 11. 08(목)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 (2)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한다.
- (3) 출결 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으로 한다.
- (4) 출결 성적이 없는 자의 출결 점수 산출 : 환산된 3학년 2학기 영어 과목 성취도 수준으로 반영

| | | | | | |
|--------|----|----|-----|-----|-----|
| 성취도 수준 | A | B | C | D | E |
| 출결점수 | 0점 | 0점 | -1점 | -2점 | -3점 |

2) 2단계 : '1단계 성적(160) + 면접(40)'으로 선발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꿈과 끼 영역) + 인성영역
(면접을 위한 사전단계인 서류평가도 면접점수에 포함됨)

나. 영역별 평가 요소 및 배점

| | | | | | | | |
|-----|-----|-----|-----|----|-----|--|-----|
| 1단계 | | | | | 2단계 | | 총점 |
| 2-1 | 2-2 | 3-1 | 3-2 | 출결 | 면접 | | |
| 40 | 40 | 40 | 40 | 감점 | 40 | | 200 |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 영역별 평가 요소 | 평가 내용 | 배점 | 관련 서류 |
|-----------------------|---|----|---------------------|
| 자기주도학습영역 (꿈과 끼 영역) |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 계획 ·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교육과정에서 동이리 활동 및 진로체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20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II |
| | ■ 자원동기 및 활동계획과 진로계획 학교특성과 연계해 본교 및 희망 전공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입학 후 활동계획, 본교 졸업 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계획 및 실현방법 | 10 | |
| 인성영역 |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핵심인성요소 】 핵심인성요소는 봉사 · 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 10 | |

※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저장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다.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최종 저장본이 자동 제출됨)
 - ※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 지원자의 집합에 의한 자기소개서 작성 금지
 -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통해 표절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
-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 경제적 지원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한다.
 -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 경제적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교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및 캠프)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00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00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 전형 구분 |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일반전형 | 사정방법 | (1) 지원한 학교별로 사정함 (2) 1단계 서류전형을 통해 모집인원의 1.5배수 선발 (3)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전형 실시 (4) 1단계와 2단계 점수를 합한 입시총점(200점)으로 모집인원 만큼 최종 선발 (5)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 / 전·편입 등을 통해 충원함 | | | | | | | | | | | | | | | |
| 사회통합전형 | 자격심사 | (1) 중학교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 대상자 검증 및 학교장 추천서 발부 (2)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 | | | | | | | | | | | | | |
| | 사정방법 | (1)~(3) 일반전형과 동일 (4) 입시총점(200점)으로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전형의 전 과정을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전형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적격자 선발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로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 전형 중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 배려하여 선발 <p>◆ 사회통합전형 전형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p>※ 사회통합전형 2단계 미충원 시에 3단계 실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채널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30% 이내에서 선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학과</th> <th>독어과</th> <th>불어과</th> <th>서어과</th> <th>일어과</th> <th>중어과</th> <th>영어과</th> <th>학과별 최대선발 인원</th> </tr> </thead> <tbody> <tr> <td>인원</td> <td>1</td> <td>3</td> <td>3</td> <td>1</td> <td>3</td> <td>4</td> <td>30%(15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 후에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 엄정 조치 ※ '2019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제출 | 학과 | 독어과 | 불어과 | 서어과 | 일어과 | 중어과 | 영어과 | 학과별 최대선발 인원 | 인원 | 1 | 3 | 3 | 1 | 3 | 4 |
| 학과 | 독어과 | 불어과 | 서어과 | 일어과 | 중어과 | 영어과 | 학과별 최대선발 인원 | | | | | | | | | | |
| 인원 | 1 | 3 | 3 | 1 | 3 | 4 | 30%(15명) | | | | | | | | | | |
| 보훈자자녀전형 | 사정방법 | (1) 고입특례입학대상자전형과 동일함 | | | | | | | | | | | | | | | |
| 고입특례입학 대상자전형 | 사정방법 | (1) 1단계 서류전형을 통해 학과구분 없이 전체 모집인원의 1.5배수(8명) 선발(커파라인 동점자 모두 포함) (2)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전형 실시 (3) 1단계와 2단계점수를 합한 입시총점(200점)으로 전체 모집인원 만큼 최종선발(합격자는 전원 지망학과에 배정) (4) (3)에서 미충원 인원은 추가모집 / 전·편입 등을 통해 해당 자격자로 충원함 | | | | | | | | | | | | | | | |
| 외국인전형 | 사정방법 | (1) 일반전형과 동일함 ※ 외국인의 경우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되, 입학전형위원 회의 결정을 통해 면접 방법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추가모집 사정방법도 이에 준함

7 동점자 사정 기준

| 전형구분 | 동점자 사정 기준 |
|-------|---|
| 모든 유형 | <p>1) 1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및 사회 교과와 학기별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 국어 3학년 2학기 성적 → 사회 3학년 2학기 성적 → 국어 3학년 1학기 성적 → 사회 3학년 1학기 성적 → 국어 2학년 2학기 성적 → 사회 2학년 2학기 성적 → 국어 2학년 1학기 성적 → 사회 2학년 1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함 ※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의 경우 역사 과목으로 대체함 ※ 1단계 최종동점자는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발함. <p>2) 2단계 전형 동점자 발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동점자는 면접점수 총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영역 점수 → 인성영역 점수 →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과 진로계획 점수 → 영어 3학년 2학기 성적 → 영어 3학년 1학기 성적 → 영어 2학년 2학기 성적 → 영어 2학년 1학기 성적 → 출결점수(감점 적은 순) 순으로 선발함 |

8 합격자 배제 조건

- 가.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결과 본교 교육과정의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원자
- 나. 입학사정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한 지원자(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및 장학금 안내

가. 기회 균등 전형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

- 최종 합격자 1단계 성적 166점 이상 학생 중 성적 상위 30% 해당자

나. 교육비 지원 내용

- 지원 근거 :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참여협력담당관-829, 2018.01.26.)
-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 ※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이 아님 (교육비 지원 조사 결과에 따라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지원 내용

- 법정저소득자적 보유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는 법정 자격이 있는 동안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없음

○ 학교운영지원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화교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차액본인부담)
- 기화교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지원하지 않음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없음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에 한하여 급식비 학교장 추천 지원 있음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및 기화교등전형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등의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운영 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

- 2019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19년에 시행되는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가. 기화교등전형으로 입학하였다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까지만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함
- 참고 : 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계획 안내 (참여협력담당관-829, 2018.01.26.)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 교육비 지원 사항

●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

- ▶ 법정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 지원기준 | 학비 | |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 비고 | |
|-------------------|-----------------|---------|--|----|----------------|
| | 입학금/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 | |
| 입학전형 무관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계층) | ○ | ○ | ○ | |
| 기화교등 전형 입학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 | ○ | |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 - | - | 일반고 수준 본인부담 |
|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 | - | - | |
|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 - | - | - | - | 법정 저소득자격 없는 학생 |

● 학교운영지원비 : 일반고 수준 지원(차액본인부담)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항목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 일반학교와 동일
- ▶ 교 복 비 : 300,000원 이내, 중·고 신입생(학년)
- ▶ 앨 범 비 : 45,000원 이내, 중·고 예비 졸업생(3학년)
- ▶ 기숙사비 : 순수 기숙사비 50% + 조·석식비 전액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 일반 학교와 지원 기준 동일

다.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용 프로그램

| 구분 | 프로그램 |
|---------------|---|
| 진로·상담 | 전문 상담교사를 통한 상담활동 운영 진로상담 교사를 통한 진학지도 컨설팅 운영 |
| 학교 생활 적응 | 졸업생 멘토링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 및 진학 컨설팅 도움 |
| 교과 향상 | 주요교과 질문 교실 운영 (국어·영어·수학·과학) |
| 비교과 나눔 | 창의·인성 융합캠프(인문학, 리더십, 인지과학) 지원 품격교육 및 봉사활동 지원 |
| 기타 교육비 또는 생활비 | 필요한 경우 대원 학원 내 행복함께나누는재단 협의를 거쳐 지원 예정 |

※ 위 프로그램은 2019학년도에 한해 실시 예정인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인원은 제한 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가. 이중 지원 금지 :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대상자(합격자는 외국인고 추가모집에 지원 할 수 없음)

※ 이중지원의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 본교 합격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시행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추가모집 포함)에 응시할 수 없음

나. 1단계 탈락자에게는 전형료 27,000원 중 20,000원을 전형료 결제 계좌로 환불함(단, 환불 수수료 제외한 금액)

다.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는 면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

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성적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중학교의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단, 국제고·외고가 없는 지역의 기말고사 미 시행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해당 성취도 수준을 해당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음)

마.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제출한 일체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사.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아.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제외국어, 선택과목 등)

자.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물을 본교에 제출해야 완료되며,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차. 본교 신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제반서류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입학전형 및 전형 종료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본교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지원자는 입학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 공 및 이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카. 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시행 2018.01.04.)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파.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하.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기관의 지침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참고자료 1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1. 2019 사회통합전형 지원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03.26.)
- 2. 소득분위별 재산세 연세액 산출 자료 제공(서울시 세무과-7194, 2018.03.30.)

■ **[표1]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2018년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비고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836,000 | 27,572 | 4,704 | 28,497 | |
| 2인 | 1,424,000 | 44,445 | 17,355 | 45,137 | |
| 3인 | 1,842,000 | 58,049 | 34,209 | 58,731 | |
| 4인 | 2,260,000 | 71,374 | 59,490 | 71,788 | |
| 5인 | 2,678,000 | 84,229 | 84,091 | 84,887 | |
| 6인 | 3,096,000 | 97,687 | 103,841 | 98,878 | |
| 7인 | 3,514,000 | 110,096 | 122,508 | 111,500 | |
| 8인 | 3,932,000 | 122,690 | 139,394 | 124,326 | |
| 9인 | 4,350,000 | 137,557 | 156,996 | 139,572 | |
| 10인 | 4,768,000 | 149,745 | 170,039 | 152,061 | |

■ **[표2]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2018년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비고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1인 | 1,003,000 | 31,599 | 7,946 | 33,048 | |
| 2인 | 1,708,000 | 53,474 | 27,773 | 54,093 | |
| 3인 | 2,210,000 | 69,711 | 56,874 | 70,459 | |
| 4인 | 2,712,000 | 84,887 | 85,412 | 85,881 | |
| 5인 | 3,213,000 | 100,955 | 108,657 | 102,190 | |
| 6인 | 3,715,000 | 116,936 | 131,825 | 118,354 | |
| 7인 | 4,216,000 | 131,976 | 150,960 | 133,811 | |
| 8인 | 4,718,000 | 147,490 | 167,711 | 149,745 | |
| 9인 | 5,220,000 | 163,172 | 184,310 | 165,762 | |
| 10인 | 5,721,000 | 179,545 | 200,975 | 182,496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 '직장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 참고자료3** 참고

참고자료 2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 · 모 및 2촌 이내의 형제 · 자매**
 -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 · 모 또는 미혼인 형제 · 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 · 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 · 조모를, 조부 · 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 · 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 · 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 · 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 · 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이혼한 경우에도 동일)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 · 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 · 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 · 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 · 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 · 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 → 4인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추가 재산세 납입금 확인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836,000 | 27,572 | 4,704 | 28,497 |
| 2인 | 1,424,000 | 44,445 | 17,355 | 45,137 |
| 3인 | 1,842,000 | 58,049 | 34,209 | 58,731 |
| 4인 | 2,260,000 | 71,374 | 59,490 | 71,788 |
| 5인 | 2,678,000 | 84,229 | 84,091 | 84,887 |

참고자료 3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8년 기준, 단위 : (원))

| 분위 구분 |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분위 | 1,508,329 | 47,326 | 20,824 | 48,017 |
| 2분위 | 2,245,256 | 70,459 | 58,018 | 71,374 |
| 3분위 | 2,898,038 | 90,485 | 93,923 | 91,272 |
| 4분위 | 3,444,822 | 108,042 | 118,953 | 109,139 |
| 5분위 | 4,014,804 | 125,376 | 143,229 | 127,023 |
| 6분위 | 4,596,361 | 143,379 | 163,438 | 145,467 |
| 7분위 | 5,286,438 | 165,762 | 186,928 | 168,404 |
| 8분위 | 6,213,497 | 195,224 | 217,535 | 198,786 |
| 9분위 | 7,824,171 | 242,183 | 266,785 | 249,924 |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기구 비율"/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7년 1분기~4분기 기준

■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8년 기준, 단위 : (원))

| 분위 구분 | 월 추정 소득 | 재산 추정 금액* | 과세 추정 금액** | 재산세 납입금(연간)*** |
|-------|-----------|-------------|-------------|----------------|
| 1분위 | 1,508,329 | 150,832,900 | 90,499,740 | 105,740 |
| 2분위 | 2,245,256 | 224,525,600 | 134,715,360 | 172,070 |
| 3분위 | 2,898,038 | 289,803,800 | 173,882,280 | 254,700 |
| 4분위 | 3,444,822 | 344,482,200 | 206,689,320 | 336,720 |
| 5분위 | 4,014,804 | 401,480,400 | 240,888,240 | 422,220 |
| 6분위 | 4,596,361 | 459,636,100 | 275,781,660 | 509,450 |
| 7분위 | 5,286,438 | 528,643,800 | 317,186,280 | 638,740 |
| 8분위 | 6,213,497 | 621,349,700 | 372,809,820 | 861,230 |
| 9분위 | 7,824,171 | 782,417,100 | 469,450,260 | 1,247,800 |

* 재산의 1%를 월 소득으로 계산한 교육부 학교정책과(2013.04.19.)에 근거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참고자료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이하)적용 기준

■ 근거 : 2019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1733, 2018.03.26.)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참고자료3**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 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018년 기준, 단위 : (원))

| 분위 구분(경계값) |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 6개월 평균)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7분위 | 5,286,438 | 165,762 | 186,928 | 168,404 |
| 8분위 | 6,213,497 | 195,224 | 217,535 | 198,786 |
| 9분위 | 7,824,171 | 242,183 | 266,785 | 249,924 |

■ [소득 8분위 재산세 납입금 기준]

(2018년 기준, 단위 : (원))

| 분위 구분 | 월 추정 소득 | 재산 추정 금액 | 과세 추정 금액 | 재산세 납입금(연간) |
|-------|-----------|-------------|-------------|-------------|
| 7분위 | 5,286,438 | 528,643,800 | 317,186,280 | 638,740 |
| 8분위 | 6,213,497 | 621,349,700 | 372,809,820 | 861,230 |
| 9분위 | 7,824,171 | 782,417,100 | 469,450,260 | 1,247,800 |

나에게 대원외고는 ○○○이다.

저에게 대원외고는 '지도'입니다.

대원외고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준 학교입니다. 저는 우수한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대학생 그리고 사회인인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 마주할 세상을 위해서 고등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는 학교가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대원외고입니다.

조세연 독일어과 1학년

나에게 대원외고는 '마라톤'이다.

마라톤 경기에서처럼 대원외고에서도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나 자신이다. 마라톤 경기를 달리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 부정적인 나의 생각들과 싸운다. 이 때, 나와 함께 마라톤을 뛰며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서로의 경주를 응원하며 함께 뛰어준다. 마라톤에서 결승선을 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2.195킬로미터를 뛰어오는 과정과 성취감이다. 대원외고 생활에서 결승선이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승선을 향해가는 과정들이 되돌아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최다현 프랑스어과 1학년

대원외고는 저에게 '샐러드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고유의 색을 유지하며 지냈으며, 함께 섞이고 배우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가끔은 흔들리는 그릇 속에서 다져지고 내쳐지며 단단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하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릇 밖으로 나가 새로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염유진 스페인어과 2학년

나에게 대원외고는 '굳은살'입니다.

손을 많이 쓰면 손에, 발을 많이 쓰면 발에 생기는 굳은살은 모양이 조금 밍지만 자랑스러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좌절'이라는 상처가 나고, '노력'이라는 치료를 반복하며 얻어진 마음 속 굳은살. 대원외고에서의 3년 생활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입니다. 진짜 굳은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들 때마다 나를 단단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평생을 함께 해 줄 마음 속 굳은살은 대원외고가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조이빈 일본어과 3학년

최정원 영어과 2학년

저게 대원외고란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 정상에 아예 보이지 않는 기분을 느끼며 끝없는 두려움만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대원외고'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중학교 때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수업과 과제, 시험들을 거치며 그만큼 실패도 여러 차례 맛봤습니다. 하지만 등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크고 작은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딛고서 정상에 올랐을 때, 도전하기 전보다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원에서의 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함께 갈 친구들과 어디에서보다도 많은 추억을 쌓고, 수업이 어렵고 포기하고 싶더라고 어느 순간 그 자식이 자신의 것이 된 것을 보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이신영 중국어과 1학년

나에게 대원이란, 끊임없이 뒹아야 하는 '거울'입니다.

대원외고를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직도 배울 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훌륭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알고 나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흐릿하고 불분명한 거울 속 내 모습을 차근차근, 정성스럽게 닦는 것처럼 대원에서의 생활은 매일 저에게 배울 점과 반성할 점을 주었고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를 더 낫게 해준 대원. 저는 대원을 통해 진정한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www.dwfl.hs.kr



대원외국어고등학교
DAEWO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 (중곡 4동)
TEL (02) 2204-1513~5 FAX (02) 2204-1544